

4 (第93回—文化教育第4次)

<p>서울에 들어와서 기술을 여기에 공급해서 시행해 본 결과 서울市의 쓰레기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격한 공로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생활의 그런 현저한 공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민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라 죄송합니다.</p> <p>○委員長 劉大運 이게 文化局長도 그렇고 孙馥委員도 그렇고 개정 부분에 가서 국내에 거주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시민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 중 서울시정에 참여하거나 현저한 공을 남긴 사람에게 확대해서 주겠다는 의미가 이 조례 개정의 취지 아닙니까?</p> <p>○文化局長 李相鎮 네, 그렇습니다.</p> <p>○委員長 劉大운 두번째는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改正條例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내용이 전부 다 잘 제시되어 주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p> <p>○孫馥委員 시민증이 아니고 이것은 명예시민증이니까 市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p> <p>○委員長 劉大운 시민증을 갖지 않은 외국인 그거예요, 이 조례가, 잘 살펴보시면.</p> <p>○孫馥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p> <p>○委員長 劉大운 시민증이 없는 분, 우리나라에 많이 살잖아요.</p> <p>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겠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를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로 한다.</p> <p>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은 이를 삭제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2. 文化局所管懸案業務報告의件 (14時 26分)</p> <p>○委員長 劉大운 의사일정 제2항 文化局所管懸案業務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p> <p>文化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文化局長 李相鎮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市政과 문화행정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市政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p> <p>文化局에서는 지난 2월 제92회 臨時會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市政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시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 文化局業務를 추진함에 있어 議會와 긴밀히 협의해 나감은 물론 委員님들의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들어서 市政에 반영함으로써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 서울이 이루어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p> <p>.....</p> <p>(報 告)</p>
--	--